

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안내

자료출처/대한민국 관보 제12508호

자료제공/대한전기협회

◎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-70호

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고시내용(생략하고 주요 개정 내용을 발췌 소개함)은 상공자원부 전력운영과와 대한전기협회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1993년 9월 3일

상공자원부장관

[신구 주요내용 대비표]

현 행	제 정	비 고
(현행 규정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태양전지발전·연료전지·풍력발전 및 상용전지설비에 관한 규정 신설○ 광섬유케이블·전력보안통신케이블·유선TV용 금전경용동축케이블·평형도체합성수지케이블 및 은이온 살균장치의 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재 일부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기술도입이나 실용화가 예상되는 신기술·신기자재의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고압다중접지전선로○ 목재몰드공사○ 점검할 수 없는 곳의 애자사용 공사	(삭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재 폐기되고 없는 전선로나 공사 방법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
○ 저압의 사용전압을 “400V 이하” 와 “400V를 넘는” 것으로 구분	○ 저압의 사용전압을 “400V 미만”과 “400V 이상”으로 구분 개정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400V 미만(220/380V 다중접지)의 전로와 400V 이상(400V 비접지)의 전로로 구분하고 400V급 이상의 저압은 고압의 시설에 준하도록 함
○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150V 이하	○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을 300V 이하로 하고 주택의 옥내 인입구에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시설을 의무화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실에 맞도록 현재 단서로 규정하고 있던 대지전압 300V(200/380V 전로) 이하를 본문에 규정, 일반화하고 상주하는 주택에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토록 강화함

현 행	개 정	비 고
○ 고압가공전선의 나선사용을 허용함	○ 저·고압 가공전선(시가지의 22.9kV 특고 전선포함)에는 절연전선을 사용 허용함	○ 절연전선을 사용토록함으로써 안전항상을 기하고 나선선과의 이격 거리를 정리함
○ 옥내 배선과 가스관과의 이격거리 일률적으로 규정	○ 가스관의 이음부 등과 옥내배선기구(개폐기등) 등과의 이격거리를 가스관련법과 정합하도록 개정	○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수렴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정합도록함
○ 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	○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설계지침과 정합토록 매설깊이, 사용전선, 절연저항 등을 개정함	○ 교통부 요망사항을 수렴함
○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	○ 가로등, 보안등 등의 회로에 주광센서를 취부토록 “호” 신설(집중제어 등은 제외) ○ 옥외 일반조명으로 사용하는 고압방전 등은 고효율(70 lx/w) 이상의 것을 사용토록 “호” 신설	○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함 ○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함
기 타		
○ 절연내력	○ 전철에서 사용하는 스코트결선 변압기 및 전기욕기용전원장치의 절연내력시험 추가 신설	○ 규격 강화로 보안 확보
○ 콘크리트 전주	○ 설계하중 1,500kg이하 길이 20m 이하의 장착콘크리트 전주 추가 도입	○ 유선 TV용 급전선 첨가 등을 위하여 장착주 도입
○ 25,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일괄규정	○ 22.9kV 선로와 11.4kV선로로 분리 규정	○ 11.4kV 선로 폐지 대비와 보완
○ 지중전로의 “관로인입식” 선로	○ “관로인입식”을 “관로식”으로 개정	○ 직매식 중 압력에 견디는 관에 시설한 것은 관로식으로 인정
○ 전력보안통신선(통신선의 종류와 굵기만 규제)	○ 전력보안통신선의 공사방법을 규제하고 보안장치 개정	○ 보안통신설비의 신뢰성 확보

[부 칙]

-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외과조명등의 점멸장치의 시설) 제19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고압방전등의 시설) 제19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-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(단)